

(Translation)

[Official Emblem]

투자위원회 설명안

투자위원회 고시 제 Sor.1/2560 호에 따른 기술기반 인센티브(기술력 개발 방안에 따른 혜택) 신청

2017년 3월 14일 투자위원회 고시 Sor.1/2560 호에 따른 기술기반에 대한 투자촉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안을 내놓는 바이다.

제 1항 기술 경쟁력 향상에 관심을 둔 투자는 다음 2 가지 형태의 투자를 의미한다.

1.1 Section 8 기술·혁신 개발과 관련된 촉진 활동에 명시된 투자촉진 카테고리 '8.1 표적 핵심 기술 개발'의 의미는 다양한 산업의 제조 공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특정 기술 개발을 포함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해당 활동에는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첨단소재 기술 및 디지털 기술 등 4 개의 표적 기술 분야에 대해 교육 기관 및 연구소 또는 R&D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된 4 개 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설명안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1.2 표적 기술 (enabling services)의 개발을 촉진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다.

- 5.6 일렉트로닉스 설계(Electronics design)
- 7.11 연구·개발(R&D)
- 7.13 엔지니어링 설계
- 7.14 과학 실험실
- 7.15 보정(Calibration) 서비스
- 7.19 직업훈련센터(과학 및 기술 분야에 한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표적 기술 개발의 과정을 비중있게 포함해야 하며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과의 R&D 협업을 포함해야 한다.

제 2 항 절차 적용

2.1 제 1.1 항 및 제 1.2 항에 따른 기술기반 혜택을 신청하려는 신청자는 "서비스 촉진 신청서"(F PA PP 03) 양식을 "기술 기반 인센티브에 따른 투자 촉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Translation)

2.2 촉진 프로젝트의 기술개발의 결과가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술기반 인센티브 방안에 따른 투자촉진 신청서에 상품의 종류와 생산능력을 명시해야 한다.

제 3 항 기술기반 인센티브에 따라 촉진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세부 사항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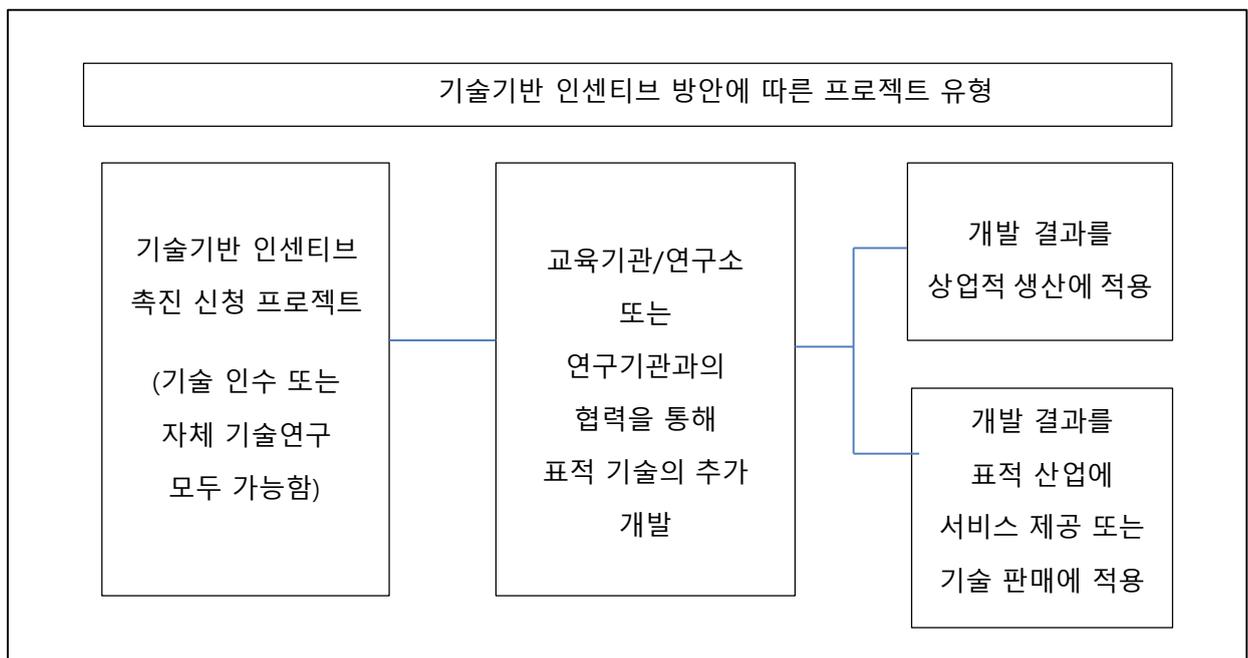
3.1 프로젝트는 제 1.1 항 및 제 1.2 항으로 촉진받은 표적 기술 개발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2 제 1.1 항과 제 1.2 항으로 촉진받은 프로젝트는 세무국에 등록된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에 협업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세무국에 등록된 해당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은 태국에 소재한 기관을 기본으로 한다. 해외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연구 컨소시엄 등과 같이 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형태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3.3 표적 기술 개발의 결과는 반드시 상업적 및/또는 서비스 제공/ 기타 산업지원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3.4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과의 연구 개발에 대한 협업 계획에 대한 양해 각서(MOU) 또는 협동 연구개발 제안서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기반 인센티브 부여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5 개발과정의 결과가 상업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투자청은 기존 프로젝트의 투자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신청자가 상업적 생산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할 수 있다. 단, 기술개발 결과물이 적용되는 상업적 생산 공정에 한한다.



(Translation)

제 4 항 기술기반 인센티브를 받은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4.1 제조 과정의 기본으로서 표적 기술의 개발 및 사용

- (1) 암, 류마티스, 알레르기 및 건선과 같은 질병 치료에 사용할 무균 의약품 생산을 위한 발효, 세포 배양 및 쥐 난소 세포로부터 단백질 추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생명 공학의 사용
- (2) 합성 대리석과 같이 천연 재료보다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첨단 소재 기술을 사용한 건축 자재 생산 프로젝트

4.2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으로서 표적 산업의 개발 및 사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과의 개발 또는 협력을 통해 얻은 고주파 또는 고주파 진동을 사용하는 초음파, 압력 및 진동 크기를 이용한 첨단 소재 형성 공정에 대한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활동 또는 과학 테스트 서비스 활동.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정은 시재료 선택과 관련된 서비스 준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적합한 작업 결과물을 얻기 위한 매개 변수 제어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 (2)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고용주를 위한 시스템 설계, 노동력 절감, 기타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분야(예: 콜센터 또는 병원의 환자 질병 진단 및 분석 등)

제 5 항 프로젝트 세부사항 수정 관련 건

기술기반 인센티브를 받은 신청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사항, 예를 들어 생산 능력의 증대, 제품 형태 추가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의 확장 등에 대해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기준으로 수정안의 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1 기술기반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은 프로젝트의 생산 능력의 증대, 제품 종류의 추가 또는 서비스 영역의 확장은 프로젝트의 표적 기술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의 수정사항에 대한 승인이 검토될 수 있다.

5.2 표적 산업에서 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핵심 기술을 사용하여 표적기술 개발을 포함한 활동 또는 기술기반 인센티브를 받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만약, 연구 및 / 또는 개발 결과가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인센티브를 부여한 후에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신청자가 상업적 생산을 직접 하든 혹은 제 3 자를 고용하여 생산을 하든 상관없이 프로젝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프로젝트의 법인소득세 면제가 되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이상 기술기반에 대한 투자촉진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는 바이다.

투자청

2017 년 7 월 5 일

[Seal of the Board of Investment]

(Translation)

핵심 기술 대상

| 바이오 기술 | 첨단 소재 기술 |
|--|--|
| Cell Culture/Tissue Engineering Technology | Advanced Catalyst Technology |
| Gene and Molecular Technology | Composite Materials Technology |
|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 Functional Materials Technology |
| Omics Technology | Photonics & Optical Technology |
| Biodegradable Materials Technology | Printed Electronics and Organic Electronics |
| Bioinformatics | Advanced Materials Forming Process |
| Advanced Bioprocessing Technology | Materials Characterization Technology |
| Bio-Analytical Technology | Energy Storage |
| Biomaterial Production Technology | |
| 나노 기술 | 디지털 기술 |
| Drug Delivery System | Big Data Analytics Technology |
| Nano-encapsulation | Decentralized Sequential Transaction Database |
| Nanofiber Technology | Human Computer interaction Technology |
| Nanomaterials Syntheses |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
| Membrane Technology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
| Absorption Technology | Virtual &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
| Nano-characterization and Testing | Digital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
| Nanostructure Fabrication | Software Testing Technology |
| Surface Coating/Engineering Technology | Embedded Technology |
| | Smart Grid |
| | Wearable Technology |
|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 Sensor Technology |
| | Automation Technology |
| | Robotics Technology |